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7. 19 선고 2017가단21285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2. 6 선고 2017나38727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7. 19 선고 2017가단212852 판결

### 전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7. 19.

### 주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, 피고 C, 피고 E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,

나. 피고 C, 피고 E은 별지 4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을 수거하고,

다. 피고 B, 피고 D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,

라. 피고 A,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F 및 G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1, 2, 4,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을 인도하고,

마. 피고 C, 피고 D는 서울 용산구 H 및 G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5, 6, 7, 8, 9, 10, 11, 12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을 인도하고,

바. 피고 E은 서울 용산구 H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13, 14, 15, 16, 17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ㄷ) 부분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## 판사추성업

별지